

의안번호	제 281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5년 11월 4일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15. 11. 4.
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세수결손에 따른 교육재정의 어려움,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, 경직성경비 증가, 교육사업비 감소 등에 대처하기 위해, 순세계잉여금의 20%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지방채 상환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산정·교부되는 경우에는 감채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설치 근거 조항 정비(안 제1조)
- 나. 기금조성에 대한 규정 완화(안 제2조제2항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별첨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 - 2) 입법예고(2015. 7. 31. ~ 2015. 8. 20.): 제출된 의견 없음
 - 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4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 - 5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”을 “충청북도교육감”으로,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”을 “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교육감”을 “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2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52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방채 원리금으로 상환한 경우
 2. 지방채의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산정·교부되는 경우
-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의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청북도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</u>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「<u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</u>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</u>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u>충청북도 교육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142조에 따라 <u>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<u>기금</u>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② <u>교육감</u>은 매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<u>다만</u>, 「<u>지방재정법</u>」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<u>충청북도 교육청 감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</u>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. <u>다만</u>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6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략)</p> <p>② 교육감은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기금운용 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	<p>1. 「지방재정법」 제52조에 따라 <u>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방채 원리금으로 상환한 경우</u></p> <p>2. <u>지방채의 상환재원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산정·교부되는 경우</u></p> <p>제6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제1항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<u>제1항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5.6.22.] [법률 제13335호, 2015.6.22. 일부개정]

제3조(「지방자치법」과의 관계)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「지방자치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 또는 “시·도지사”는 “교육감”으로, “지방자치단체의 사무”는 “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”로, “자치사무”는 “교육·학예에 관한 자치사무”로, “행정자치부장관”·“주무부장관” 및 “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은 “교육부장관”으로 본다.

□ 지방자치법 [시행 2015.6.4.]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 타법개정]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“재산”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